

이 자료는 2007년 6월 19일(화) 11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실제 브리핑은 본 자료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정책 브리핑 자료

2007. 6. 19(화)

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

1. 그간의 추진경과 / 1
2. 혁신도시 건설 가시화(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) / 3
3. 부처별 '공공기관 지방이전 T/F' 활성화를 통한
이전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수립 / 5
4. 혁신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/ 7
5. 참고자료 : 미래형 첨단도시로서의 혁신도시 주요 내용 / 8
참고1 : U-City
참고2 : 공동구
참고3 :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

건 설 교 통 부
(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)

1. 제도적·법적 기반 구축

□ 「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」 수립·발표('05.6.24)

-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,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지역성장거점을 형성하기 위해
 - 175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'12년까지 지방이전하고,
 - 이를 수용하는 혁신도시를 건설기로 결정

□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('05.12)

- 「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」에 따라 각 시·도에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*의 평가결과를 토대로
 - 각 시·도지사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10개 혁신도시 확정(광주·전남은 공동혁신도시)

*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관협의회가 동수(10:10)로 추천하여 구성

□ 혁신도시 기본구상('06.10) 및 개발계획기준('06.11) 마련

- 연구용역 및 국제세미나('06.6),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혁신도시별 도시컨셉 및 개발비전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을 수립하고, 개발계획 기준을 마련

□ 혁신도시특별법령 제정·시행('07.2.12 발효)

- 혁신도시 개발절차,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혁신도시 건설의 제도적·법적 기반 완비

2. 혁신도시 건설 본격 추진

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완료('07.3~4)

-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개 도시를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·고시(4.16 완료)

☐ 개발계획 승인('07.5~)

- 혁신도시위원회 심의(5.23)를 거쳐 대구 등 7개 혁신도시의 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(5.31)

☐ 협의보상 절차 추진('07.4~)

- 토지조사, 보상협의회 구성,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7월부터 순차적으로 협의보상 착수 계획

☐ 실시계획 승인 후 9월 착공 추진('07.9~)

- 실시계획이 확정되는 혁신도시를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

1.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

- 지난 5.23 혁신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구·울산 등 7개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·고시를 완료

* 관보고시 : 대구, 울산(5.30), 광주·전남, 강원, 충북, 경북, 경남(5.31)

- 전북, 제주, 부산(동삼지구)도 6월까지 개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, 7월중으로 혁신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

* 협의 : 제주(협의완료), 전북(5.30~6.30), 부산동삼(6.1~6.30)

* 부산문현, 센텀, 대연은 추진일정에 따라 7월이후 개발계획 협의예정

- 이전공공기관의 수용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승인·고시함으로써 일부 지자체의 분산배치(개별이전) 요구는 혁신도시내 일괄이전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

2. 실시계획 수립 및 제 영향평가 협의 등 추진

- 현재 수립중인 실시계획은 6월말~7월까지 승인신청을 받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월말부터 승인할 계획

- 개발계획이 완료된 7개 혁신도시에 대한 환경·교통·재해영향평가는

○ 대구 등 5개 혁신도시는 환경부 등 평가기관에 평가서를 6월에 제출하여 협의중

○ 충북, 경남은 6월중으로 평가서를 제출하여 실시계획 승인전까지 평가협의를 완료 예정

* 환경영향평가(환경부) : 대구, 울산(6.5제출), 경북(6.11), 광주·전남, 강원(6.12)

* 교통영향평가(건교부) : 대구, 울산, 경북(5.31), 광주·전남, 강원(6.4)

* 재해영향평가(방재청) : 대구, 울산, 경북(6.13), 광주·전남(6.14), 강원(6.11)

* 제평가 초안협의 : 9개 도시 기 완료(3~5월 완료), 부산(협의중)

□ 대구, 울산, 광주·전남 혁신도시는 대도시권으로 광역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

○ 대구, 울산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 교통개선대책을 확정(5.28)하였고, 광주·전남은 6월중 확정 예정

* 나머지 혁신도시는 개발계획에 광역교통망 설치와 비용분담 방안을 제시

□ 혁신도시를 모범적인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개발계획에서 기본방향이 제시된

○ U-City, 공동구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등은 향후 실시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

* 미래형 첨단도시로서의 혁신도시 주요 내용 : 참고자료 참조

부처별 '공공기관 지방이전 T/F' 활성화를 통한 이전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수립

1.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개요

□ 법적근거 :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

□ 수립 대상기관 : 155개 이전공공기관

- 178개* 전체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「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」에 포함되어 행정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 23개 정부소속기관**은 제외

* 6.24계획상의 175개 기관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관세국경관리 연수원의 신설 및 농진청의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결정(국무회의 심의·의결, 3.20)으로 3개 기관 추가

** 23개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정부소속기관은 행정도시특별법 적용

□ 지방이전계획의 필수사항(특별법 §4① 및 동 시행령§3①)

- 이전의 규모, 범위 및 시기에 관한 사항
- 이전비용 산정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
-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
-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

□ 수립절차 및 일정

- 각 이전공공기관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에 제출(변경할 때에도 동일) : '07.4~7
- 소관 행정기관에서 검토·조정후 건교부에 제출 : '07.8~9
- 건교부장관은 내부 검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균형위 심의를 거쳐 승인 : '07.10~

2. 부처별 ‘공공기관 지방이전 T/F’ 활성화

□ 부처별 T/F 활성화를 통한 소관 부처의 주도적 역할

- 부처별 ‘공공기관 지방이전 T/F’*를 활성화하여 각 부처 주도하에 소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수립

* ‘05.3.9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“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”에서 각 부처별 추진체계 구축, 이전기관에 대한 정책설명 등을 위해 부처별로 T/F 구성

- 각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검토·반영하여 실행가능한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고, 이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을 ‘12년까지 차질 없이 지방이전하기 위해서는

- 해외 사례*와 같이 소관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과정에서 소관 부처의 주체적인 역할 필요

* 영국 및 일본의 경우, 각 부처가 소관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소관 부처의 장이 부처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책임

□ ‘범정부 T/F 협의체’ 구성·운명을 통한 점검·조정
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, 관련 소관 부처가 참여하는 ‘범정부 T/F 협의체’를 구성하여

- 각 부처 T/F의 활동상황을 점검·조정기로 국무조정실 범정부대책반 회의(4.24)를 통해 관계부처간 결정

※ 제1회 ‘범정부 T/F 협의체’ 회의 개최(5.11)하여 부처별 T/F 운영 상황 및 소관 이전기관 이전계획 수립 상황 점검

□ 지원 근거 : 혁신도시특별법 제16조제2항

-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”

□ 기반시설 국고지원 규모는 인근도시와 혁신도시의 연계성, 지역의 특성 및 기반시설 수요, 지역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,

- 시·도별 기반시설비의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금년 하반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

* 기반시설 지원규모(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, '05.6.24) : 산업단지 지원수준

□ 국고지원 대상 기반시설은 혁신도시 진입도로, 상·하수 시설 및 기타 국가부담이 불가피한 시설 등으로 검토중

□ 또한, 광주·전남공동혁신도시에는 타 혁신도시에 비해 추가 지원할 예정

*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2문 : “20이상의 시·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.”

⇒ 대상시설 선정 및 시설별 지원규모 등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과 관련하여 관계부처(기획예산처 등)와 협의중

참 고 자 료

《미래형 첨단도시로서의 혁신도시 주요 내용》

참고1 : U-City / 11

참고2 : 공동구 / 13

참고3 :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/ 14

□ 추진배경

- 혁신도시에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U-City를 도입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,
- 신산업 창출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성장 거점으로서의 혁신도시 기능을 제고

※ U-City 개념 : 유비쿼터스 기술로 도시공간 기능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첨단 IT도시, 즉 유비쿼터스와 도시의 만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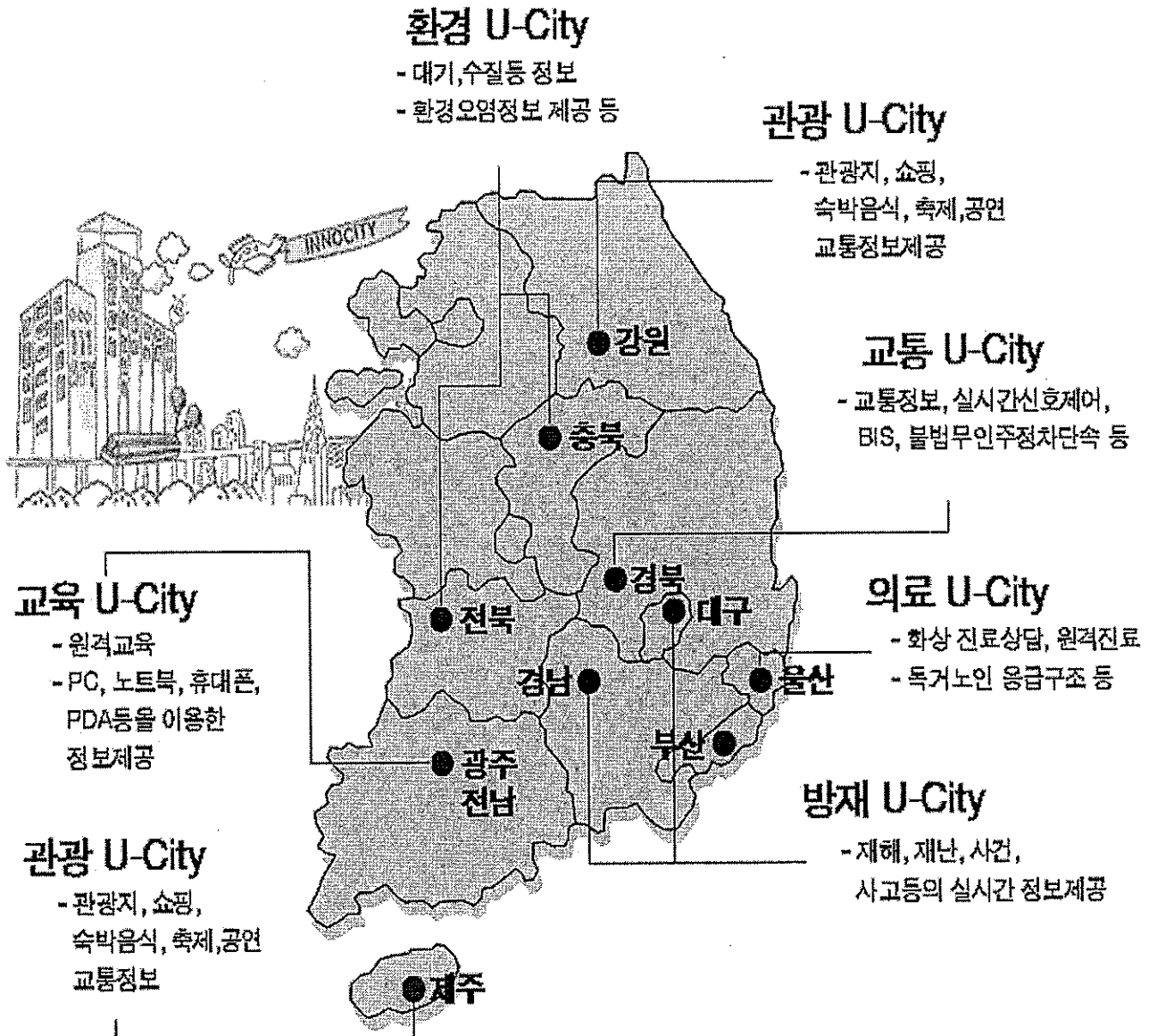
□ 기본방향

- 혁신도시에 U-City 공통 기반서비스를 필수시설로 설치
 - * (공통 기반서비스) U-교통, 행정, 환경, 방재·치안, 시설관리분야
- 공통 기반서비스 외에 혁신도시별로 특성과 환경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개발하여 추가로 구축
 - * (특화서비스 예시) 관광, 원격진료, 교육, 방범·방재서비스 등

□ 향후계획

- 혁신도시별 실무위원회를 구성('07.6)하여 '07.12까지 구축(안) 마련
- U-City 실시설계('08.2)를 거쳐 '08년 하반기에 사업착수 예정

혁신도시 U-City 구축(안)



※ 기본서비스(10개 혁신도시에 공통으로 서비스되는 기능)

: 방범, 교통, 상·하수도, 포털, 다자간협업시스템,
재난/재해서비스

□ 추진배경

- 혁신도시내 도로 반복굴착 억제를 통한 예산절감,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혁신도시내 공동구 설치를 추진

※ 공동구 개념 : 지하매설물(전기·가스·수도 등의 공급설비, 통신시설, 하수도시설 등)을 공동 수용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

□ 기본방향

- 대중교통축 등 주요교통축에는 공동구를 설치하고 관련 지하시설물을 최대한 수용하여 도시를 경제적으로 관리
 -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,
 - 기술발전에 따른 도시변화 및 시설물 대한 장래수요량 등을 충분히 예측하여 시설을 확보할 계획

□ 대상도시

- 도시규모가 330만㎡ 이상의 정형화된 도시로 집적의 이익이 있는 도시를 대상
 - 강원, 광주·전남, 충북, 경남 및 전북 등 5개 도시

□ 향후계획

- 공동구 설치방안 용역('07.4~6) 결과(설치방향, 규모 등)를 실시계획에 반영

《 국내외 공동구 설치사례 》

(1) 국내 사례

□ 여의도 개발(6km, 1978년)시 공동구를 최초 설치한 이래,
전국 21개소(약 105km) 설치로 '00년 이후 설치 저조

- * 서울 6개소 32.8km (목동, 여의도, 개포, 가락, 상계, 상암)
- * 경기 7개소 42.05km (부천, 분당, 평촌, 일산, 산본, 수원, 고잔)
- * 기타 8개소 28km (부산, 인천, 대전, 광주, 오창, 여수, 구미, 창원)

○ 행복도시, 은평뉴타운 및 송도신도시는 공동구 설치 추진 중

- * (행복도시) 22.5km, 4련(13m×2.5m), 전기, 통신, 쓰레기, 상수도, 중수로, 가스, 지역난방
- * (은평뉴타운) 1.0km, 상수도, 전력, 통신, 난방, 쓰레기
- * (송도신도시) 9.3km, 상수도, 전력, 통신, 난방, 쓰레기, 중수

(2) 해외 사례

□ 유럽, 미국 및 일본 등에서 공동구 건설이 활발히 진행

○ 유럽과 미국은 국가에 따라 공동구 본체 구조물이 다양한 형태로 격벽이 없는 동일구에 모두 수용하는 것이 특징

- * 프랑스(1832년 파리), 영국(1861년 런던 킹스웨이), 독일(1890년 함부르크), 미국(NASA, 미군기지, 대학구내 등), 헝가리, 스페인, 스위스, 필란드, 러시아 등

○ 일본은 1920년 관동대지진 이후 도시복구사업 일환으로
공동구 3개소 설치이후 활성화

(1963년 “공동구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” 제정·시행)

참고3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(CPTED)

□ 추진배경

- 건축물 및 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혁신도시의 범죄예방 능력을 강화

※ CPTED(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) : 건물구조·도로 형태·조명 등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여 주거침입 절도와 같은 기회성 범죄의 발생을 예방

□ 기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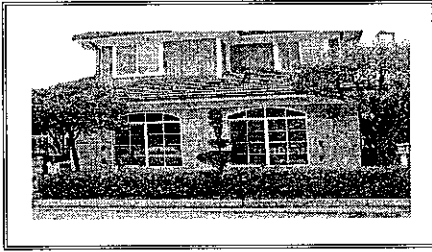
-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행동양식을 고려한 환경설계를 도입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
 - (자연적 감시) 가시권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배치
 - (분명한 시야선 확보) 낮은 담장, 정돈된 관목, 투명한 울타리 등 설치
 - (부지용도를 다양화) 다양한 시설들을 배치하여 활용도를 높임
 - (영역성 강화) 조경의 정비, 작은 울타리 등을 설치
 - (적합한 조명 사용) 보행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조명 사용
 - (고립지역 및 사각지역 개선) 블록 거울, 응급전화, CCTV 등을 설치

□ 향후계획

- 혁신도시별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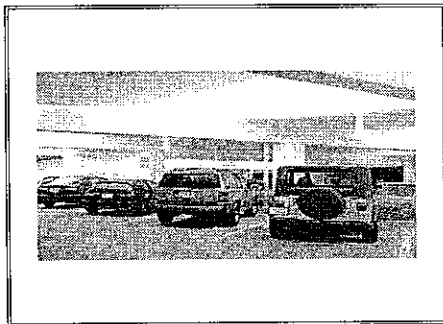
《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주요내용 》

● 분명한 시야선 확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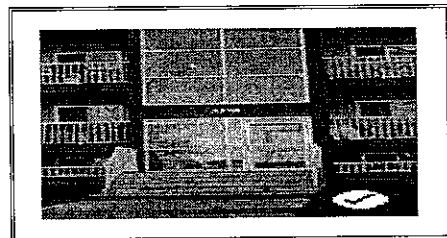
- 건물설계나 도시계획시 분명한 시야선을 확보하고 범인이 숨을 수 있는 장소는 제거
- 건물내의 예리한 코너, 돌출부위, 기둥 등 시야선을 방해하는 것은 제거해야 하며 개조가 불가능한 곳은 CCTV, 볼록거울과 같은 기계적 장비를 설치

● 조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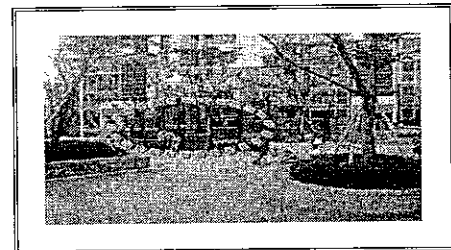
-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로등 설치
- 10m 이상 거리에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조도 유지
- 밝은 조명을 적게 설치하는 것보다 약간 어둡더라도 여러개의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적

● 고립지역 개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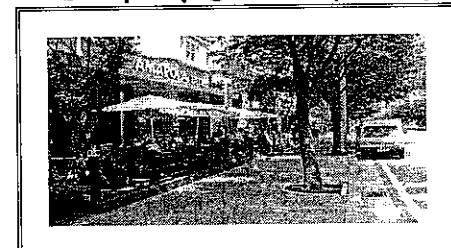
- 계단 및 경사로에는 유리창을 설치하거나 개방하여 주변에서 충분한 관찰이 가능하도록 설계
- 고립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에 조명 설치
- 저층단지의 주차장은 주변지역이나 빌딩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

● 사각지대 개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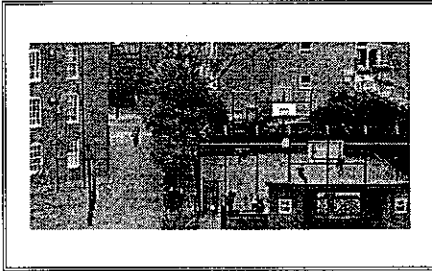
- 제거가 어려운 함정지역은 일과시간 이후나 사용되지 않는 기간에는 폐쇄
- 주변환경을 정비 또는 적절한 조명 사용
- 승강기 문에는 유리창을 설치하거나 CCTV, 비상벨 등과 같은 보안시설의 설치 권장

● 부지용도 다양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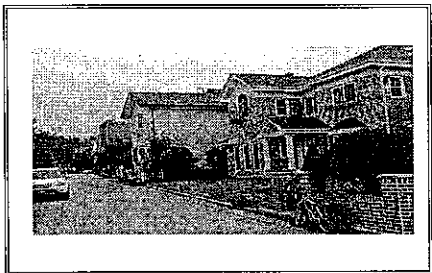
- 주거지역내 사무실 단지에 어린이 집이나 휘트니스 센터, 상점 등을 배치
- 부지용도를 다양화하여 환경적, 경제적, 미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주민들의 시설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자연적 감시를 증가

● 활동인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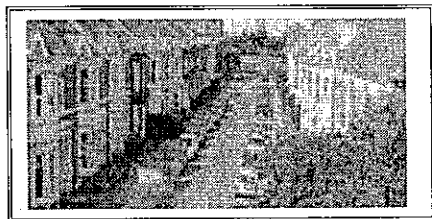
- 도로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매점, 편의점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익명성으로 인한 공포감 완화
- 청소년을 위한 놀이터, 쉼터, 청소년 센터, 스포츠 공간 등을 조성하여 범죄나 비행의 기회 차단
- 한 장소에 많은 청소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설계

● 영역성 강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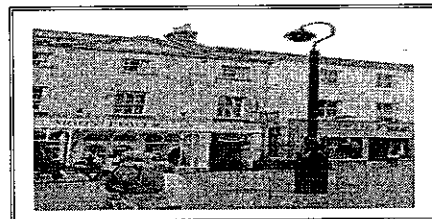
- 조경의 정비나 작은 울타리를 설치하여 영역성 강화
- 일상적인 시설을 위하여 사용된 재료는 관리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 파손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
- 낙서제거, 쓰레기 처리, 고장난 시설물 수리 등은 공공기관이나 대지의 관리인에 의해 즉시 제거 필요

● 도로구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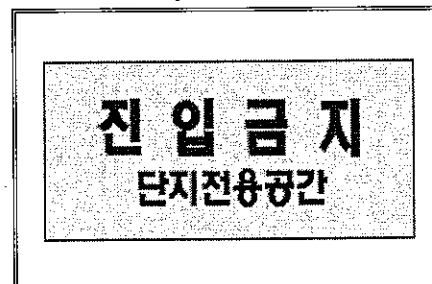
-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로 위치·폭 선정
- 지역 특성에 따라 cul de sac(막다른 골목)설치 등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도로 구조 선정

● 방범시설물



- 상가 등 범죄예상지를 중심으로 CCTV 설치
- 출입카드·민간경비원 등을 통한 출입통제권고
- 주차장 등 취약지에 비상벨 설치

● 정확한 정보제공 등



- 적절한 곳에 위치한 표지판과 지도는 지역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안전감 제공
- 표지판은 분명하고 일관되어야 하며 메시지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준화
- 강한 색깔이나 표준 심벌, 간단한 지도와 그래픽 등을 사용, 크고 읽기 쉽게 작성